

강릉시 공고 제2015 - 627호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강릉시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3조)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경제진흥과장, 전화 : 640-5537, 팩스 : 640-4748, 담당자 : 김대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 주소:우)210-703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 전화:033-640-5537, FAX:033-640-4748, e-mail:alxwnf@korea.kr

붙임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부. 끝.